

-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조례안 -

## 審 査 報 告 書

2006. 6. 19.  
제250회 임시회

### 1. 심사 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6년 6월 5일
- 회부일자 : 2006년 6월 5일

다. 상정일자 :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- 2006. 6. 14 :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의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사의결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곽연창)

가. 제안 이유

- 화재 등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날로 증가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소방파출소 신설과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를 개선,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
  - 충주소방서의 이전 신축과,
  - 청주서부소방서 부용파출소를 신축하며
-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벤처기업 활성화 및 유비쿼터스 BIT기반 연 구개발 거점단지로 육성하기 위하여
  - 오창벤처프라자 부지와
  - U-플랫폼운영센터 신축 예정부지를 우리 도의 출연법인인 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에 매각하고자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 내용

##### « 재산의 취득 ;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 »

- 위치 : 충주시 목행동 489
- 사업규모
  - 토지매입 : 1필지  $13,350\text{m}^2$
  - 건물신축 : 1/3층  $3,960\text{m}^2$ (철근콘크리트 스라브)
- 사업기간 : 2006. 6 ~ 2007. 12

- 사업비 : 6,600백만원(도비)

##### « 재산의 취득 ; 청주서부소방서 부용파출소 신축 »

- 위치 :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96-1
- 사업규모
  - 토지매입 : 1필지  $2,812\text{m}^2$
  - 건물신축 : 2층  $825\text{m}^2$ (철근콘크리트 스라브)
- 사업기간 : 2006. 6 ~ 2007. 12

- 사업비 : 1,875백만원(도비)

##### « 재산의 처분 ; 오창벤처프라자 및 U-플랫홈운영센터 부지매각 »

- 위치 :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1-1번지 등 2필지
- 매각면적 :  $9,920.9\text{m}^2$ 
  - 오창벤처프라자 부지  $6,614.9\text{m}^2$
  - U-플랫홈운영센터 부지  $3,306.0\text{m}^2$
- 매각시기 : 2006. 10 ~ 12
- 재산가액 : 2,189,216천원
- 매수자 : (재)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#### (기획행정전문위원 연기봉)

##### ○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본 변경계획안은

- 충주소방서 및 청주서부소방서 부용파출소 이전 신축과 오창벤처프라자 및 U-플랫폼 운영센터 부지매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.

##### ○ 먼저 재산의 취득사항으로서,

- 충주시 연수동 529-1번지 소재 현 청사를 충주시 목행동 489번지로 이전하려는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계획은 그동안 소방행정 수요의 증가에 비례하여 인력과 장비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었음에도
- 1985년 증축된 현 청사는 낡고 비좁아 사무 및 주차공간 등이 부족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.
- 특히 부지  $3,002\text{m}^2$ , 건평  $1,714\text{m}^2$ 의 현 청사에는 펌프 23대, 구급차 12대, 골절차 3대 등 55대의 소방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소속직원 155명이 근무하고 있어 매우 열악할 뿐 아니라
- 이로 인한 차고지 부족 등으로 소방차량 10여대의 노숙이 불가피한 실정이며, 의무소방대원의 생활관마저 낡고 협소하여 병영생활에 큰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.
- 이에 도비 66억원을 투자하여 충주시 목행동 489번지 소재 공장용지  $13,350\text{m}^2$ 의 부지에 건평  $3,960\text{m}^2$  규모로 청사를 이전 신축하려는 것은 시기적절한 조치며 바람직하고 타당하다고 여겨짐.
- 다만, 도로 등 이전대상지역의 제반출동여건, 사업비 66억에 대한 확보방안, 그리고 지방재정 투·융자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,

- 이전 신축예정지인 목행동이 현 연수동 청사보다는 시내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출동시간 지연 등 접근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제시가 필요함.
- 다음 청주서부소방서 부용파출소 신축이전 계획임.
  - 청원군 부용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 영향과 청원IC로부터 접근성이 좋아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, 군수보급창 등이 설치되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 소방행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.
  - 그러나 근무인력 2명과 소방장비 2대인 현 소방파견소 체제로는 효율적인 대처가 못된다는 판단에 따라 파견소를 파출소로 승격하는 한편, 근무인력을 9명 증원하고 소방장비도 펌프차와 물탱크를 각각 1대씩 확충하면서 이와 관련한 청사도 신축하려는 것임.
  - 신축규모는 총 18억 7,500만원을 투자하여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96-1번지에 부지 2,812㎡, 건물 2층 825㎡로 건립될 예정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,
  -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용지역의 최근 소방수요 증가추세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이전시 제반출동여건은 종전 보다 얼마나 개선되는지? 등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끝으로 재산 매각사항으로서 오창벤처프라자 및 U-플랫폼운영센터 부지 매각계획의 건임.
  - 본 재산 매각계획은 (재)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이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지식·기술집약형 첨단산업단지 및 유비쿼터스 BIT 기반연구개발 거점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

- 우리 도 소유의 오창벤처프라자 부지와 U-플랫폼운영센터 신축 예정부지를 매각하려는 것임.
- 매각부지는 2필지  $9,920.9\text{m}^2$ 로 오창벤처단지내 오창벤처프라자 건물이 들어서 있는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1-1번지 공장용지  $6,614.9\text{m}^2$ 와 유비쿼터스 기반 U-플랫폼 운영센터 건립예정부지 청원군 오창면 각기리 643-6번지 공장용지  $3,306\text{m}^2$ 이며, 재산 가액은 21억 8,921만 6천원임.
- 검토결과, 우리 도 핵심전략산업인 BIT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의 업무를 주로 맡게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를 매각하려는 본 계획은 타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로 여겨짐.
- 다만, 유비쿼터스 기반 U-플랫폼 운영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설명과 함께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추진일정,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기대효과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 이 필요하다고 여겨짐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 략”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※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

#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

의안  
번호

429

제출연월일 : 2006년 6월 5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화재 등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날로 증가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소방파출소 신설과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를 개선,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
  - 충주소방서의 이전 신축과,
  - 청주서부소방서 부용파출소를 신축하며
-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벤처기업 활성화 및 유비쿼터스 BIT기반 연구개발 거점단지로 육성하기 위하여
  - 오창벤처프라자 부지와
  - U-플랫홈운영센터 신축 예정부지를 우리 도의 출연법인인 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에 매각하고자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재산의 취득

#### «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 »

- 위치 : 충주시 목행동 489
- 사업규모
  - 토지매입 : 1필지  $13,350\text{m}^2$
  - 건물신축 : 1/3층  $3,960\text{m}^2$ (철근콘크리트 스라브)
- 사업기간 : 2006. 6 ~ 2007. 12
- 사업비 : 6,600백만원(도비)

## « 청주서부소방서 부용파출소 신축 »

- 위치 :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96-1
- 사업규모
  - 토지매입 : 1필지  $2,812\text{m}^2$
  - 건물신축 : 2층  $825\text{m}^2$ (철근콘크리트 스라브)
- 사업기간 : 2006. 6 ~ 2007. 12
- 사업비 : 1,875백만원(도비)

## □ 재산의 처분

## « 오창벤처프라자 및 U-플랫홈운영센터 부지매각 »

- 위치 :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1-1번지 등 2필지
- 매각면적 :  $9,920.9\text{m}^2$ 
  - 오창벤처프라자 부지  $6,614.9\text{m}^2$
  - U-플랫홈운영센터 부지  $3,306.0\text{m}^2$
- 매각시기 : 2006. 10 ~ 12
- 재산가액 : 2,189,216천원
- 매수자 : (재)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

## 3. 예산상황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재산취득	재산처분	교환취득	교환처분
계	8,475,000	2,189,216	-	-
○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	6,600,000			
○ 청주소방서 부용파출소 신축	1,875,000			
○ 오창벤처프라자 및 U-플랫홈운영센터 부지매각		2,189,216		

## 4.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서 : 별첨

## 5. 관계법령 : 별첨

-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
-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

## 공유재산관리계획서

### □ 2006년도 관리계획 총괄표(7-1)

(단위 : 천원)

□ 200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(7-2)

(단위 : m<sup>2</sup>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주정가액 (천원)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,성명	비고
	지목	소 재 지	수 량					
계	토지	2 건	16,162.00	2,800,000				
	건물	2 건	4,785.00	5,675,000				
	기타							
1	토지	충주시 목행동 489	13,350.00	1,800,000	2006 ~ 2007	충주 소방서 이전 신축부지	매 입 (학교법인 건국대학교)	
	건물	"	3,960.00	4,800,000	"	충주 소방서 이전	신 축	
	기타							
2	토지	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96-1	2,812.00	1,000,000	2006 ~ 2007	청주서부소방서 부용파출소 신축부지	매 입 (국 가)	
	건물	"	825.00	875,000	"	청주서부소방서 부용파출소 신축	신 축	
	기타							
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
## □ 2006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(7-1)

(단위 : m<sup>2</sup>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주정가액 (천원)	매 각 시 기	매 각 사 유	매 수 자	비고
	지목	소 재 지	수 량					
계	토지	1 건	9,920.90	2,189,216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1	토지	계 2필지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1-1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3-6	9,920.90 6,614.90 3,306.00	2,189,216 1,459,691 729,525	2006	벤처기업활성화 등 유비쿼터스 BIT기반 연구 거점단지육성	(재)충청북도 지식산업진 흥원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2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
# 관 계 법령 발 췌

## [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]

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	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
<p>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.</p> <p>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,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</p> <p>제16조(공유재산심의회)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</p> <p>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	<p>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①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(매입, 기부, 채납, 무상양수, 환지, 무상귀속, 교환, 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,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</p> <p>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 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 원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2억 원 이상 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)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(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 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)로 하고,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「지방세법」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다만, 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.</p> <p>2.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 건당 6천제곱미터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)</p>

## 【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】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	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
<p>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29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)①조례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공유재산관리계획서(별지 13호서식)</li><li>2 ~ 5호 생략</li></ol>